

---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FAQ

---

2026. 04.

기후에너지환경부

# 목 차

<b>I. 제한대상 차량</b> .....	<b>1</b>
1. 승용차 2부제 의무 대상차량은? .....	1
2. 공용(관용) 차량도 2부제 적용 대상인지? .....	1
3.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의무 대상인지? .....	1
4.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차량도 의무 대상인지? .....	2
5. 공공기관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무 대상인지? .....	2
6.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3
7. 지사, 센터 등 소속·산하기관도 2부제 시행해야 하는지? .....	3
8. 근무지에 차량 2대를 등록하여 번갈아 운행할 경우 어떻게 조치 하는지? .....	4
9. 2부제 대상차량이 승용자동차라고 하는데, 승용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건지? .....	4
10. 이번 2부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원인 차량도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철도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등도 5부제를 실시해야하는지? .....	4
11. 2부제 대상차량의 정의는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5부제 대상차량과 동일한지 이에 대한 설명은? .....	5
12. 공공기관 청사 내 민간 근로자(구내식당, 카페,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지? .....	5

## II. 제외대상 차량 ..... 6

13. 승용차 2부제 의무 대상 제외 가능 대상은? ..... 6
14. 출장·교육 등의 사유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타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도 2부제 적용을 받는지? ..... 6
15. 대학병원 환자들도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 받는지? ..... 7
16.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과 기관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는? ..... 7
17. 장애인 승용차, 국가유공자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은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 비표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8
18. 대중교통 배차간격 계산은 환승이 필요한 노선도 포함인지? · 8
19. 교대근무, 당직자 등의 차량이 운휴일이 아닌 날 출입하고 다음날(운휴일)에 퇴근해야하는 경우 전일출입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9
20. 관용차량 관련하여, 1박2일 등 여러날 동안 출장차량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 9
21. 희귀질환, 공황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 10
22. 긴급방역, 재난발생 등으로 제외차량으로 관리되지 않은 차량들이 긴급하게 출장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10
23. 제외차량으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경우 편도 30km 이상의 기준은 직선거리인지? 최단거리 혹은 최적거리인지? ..... 11
24. 다른기관에서 제외차량 비표를 받은 차량은 출입 시켜도 되는지? ..... 11
25.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은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지역의 첫차, 막차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 11

26. 관용차량이 장거리 출장(30km 이상 등)가는 경우에는 제외차량 가능한지? ..... 12
27. 6시 이전 출근 11시 이후 퇴근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전부 제외차량으로 관리하는지? 간헐적 제외차량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 12
28. 제외차량 중 기타 인정하는 예시는? ..... 13
29.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의 경우, 유치원 등에 아이를 등원 시킨 후 출근할 경우는 혼자 출근하게 되는 데 이런 경우는 기존처럼 제외차량으로 인정되는지? ..... 13
30.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 거리 800m'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 14
31.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직원차량의 경우 출장이 잦으면 예외차량으로 인정 가능한지? ..... 14
32. 부부가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임신부의 차량뿐만 아니라 남편 차량도 임신부 동승 차량으로 제외 가능한지? ..... 15
33. 공공기관의 시험용 차량 등 업무상 꼭 필요한 차량의 경우 구제 방안이 있는지? ..... 15
34. 개인의 자택이 아니라 도로공사 등 사업장이 교통열악지역에 있는 경우도 2부제 제외차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6
35. 박물관 등에 가족을 동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5부제 공영주차장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16
36.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에 대해 기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 등만 포함되는지? 기관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포함인건지? ..... 17

- 37.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로 제외적용 받은 비표는 다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도 제시 가능한지? ..... 17
- 38. 공공기관 청사주차장에 기관 요청에 의한 A/S차량(공사, 물품 관리 등)의 입차도 제한되는지? ..... 18
- 39. 장거리 출퇴근 차량의 기준이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출퇴근 시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위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매우 불편한데 지역 간 이동에 대해서도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 18

**III. 운행제한방법 ..... 19**

- 40. 승용차 2부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방법은? ..... 19
- 41.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기관 주차장에 장기주차한 차량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 19
- 42. 31일이 있는 경우 짝수 차량은 이틀 연속 운행을 못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 19

**IV. 시행방법 ..... 20**

- 43 승용차 2부제 제외차량 비표 양식을 꼭 준수해야 하는지? ... 20
- 44. 승용차 2부제 시행 홍보 방법은? ..... 20
- 45. 이행실태 점검 시 미흡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패널티는? ..... 21
- 46.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적용 우선순위는? 21
- 47. 2부제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디서 제출하는지? ..... 22
- 48. 2부제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대상 기관은? ..... 22
- 49.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입주기관의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 작성 방법은? ..... 23

- 50.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23
- 51. 소속기관의 경우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는 본청에서 취합제출 하는지?  
각자 제출하는지? 사무소, 분소 등 작은 단위로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함 ..... 24
- 52. 2부제 관련 사내방송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 24

**V. 위반적발 및 조치 ..... 25**

- 53. 공공기관 청사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도 단속 필요한지? .... 25
- 54. 승용차 2부제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은? ..... 25
- 55.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을 목격·신고한 경우 조치 방안은? .... 26
- 56. 상습위반자(3회 이상)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 26
- 57. 단속 및 위반에 대한 기준은 출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것을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 27
- 58. 5부제 단속에서 위반했던 횟수는 2부제 단속에 누적되어 징계  
대상이 되는지? ..... 27

**VI. 기타 ..... 28**

- 5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 28
- 60. 공공부문이 승용차 2부제 적극 실천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나, 2부제 준수를 적극 이행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지? ..... 28



## 제한대상 차량

### 1 승용차 2부제 의무 대상차량은?

####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2026.4.2.) 1-3항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임대차량 포함)가 대상임
-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준하여 요일제가 적용되어 차량번호와 요일에 따라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2 공용(관용) 차량도 2부제 적용 대상인지?

#### <답 변>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도 2부제 적용 대상임
-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이용하면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장이 제외차량으로 인정 가능

### 3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의무 대상인지?

#### <답 변>

-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와 천연가스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석유류를 직접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량도 2부제 적용 대상

4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차량도 의무 대상인지?

<답 변>

- 국·공립대학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차량이 2부제 의무 대상이며, 재학생 및 방문자 등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학업 및 연구 등에 의해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간대에 등하교하는 학생 차량 등은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교장이 제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표를 발급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함

5 공공기관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무 대상인지?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기관이 민간건물에 소재한 경우도 2부제를 준수해야함
- 공공기관장은 해당건물주 등 관리인에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협조를 요청해야하고
- 건물주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소속 직원의 차량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 순찰 등을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해야 함

6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인구수와 무관
-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근무자의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장이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비표를 발급할 수 있음

7	지사, 센터 등 소속·산하기관도 2부제 시행해야 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의 지사, 지역본부, 소속기관 등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2부제 시행대상
- 본부에서 2부제 시행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관리해야 함
- 본부는 지사 등의 이행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제출해야 함

8	근무지에 차량 2대를 등록하여 번갈아 운행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	--

<답 변>

- 의무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출퇴근용 차량을 한 대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2대 중 한 대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등록된 차량 변경을 원할 경우 담당자 승인하에 변경하기 바람

9	2부제 대상차량이 승용자동차라고 하는데, 승용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건지?
---	--

<답 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1호에서 정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말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됨

10	이번 2부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원인 차량도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철도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등도 5부제를 실시해야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장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 가능

11	2부제 대상차량의 정의는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5부제 대상차량과 동일한지에 대한 설명은?
----	--

<답 변>

- 2부제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차량과 동일함

12	공공기관 청사 내 민간 근로자(구내식당, 카페,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됨
- 다만, 청사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민간인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이므로 5부제를 준수해야함

13 승용차 2부제 의무 대상 제외 가능 대상은?

<답 변>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차량은 제외 가능
- 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상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외차량으로 인정가능
- 근무자가 제외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비표를 발급하여 제외차량에 비치토록 해야함

14 출장·교육 등의 사유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타 공공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도 2부제 적용을 받는지?

<답 변>

- 출장, 교육 등의 목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2부제 적용 대상
-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신속성을 요하여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으로 제외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제외차량으로 운행 가능

15 대학병원 환자들도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 받는지?

<답 변>

- 대학병원 주차장 2부제 대상은 병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소유 차량에 한정
-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를 태운 차량은 출입 가능

16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과 기관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는?

<답 변>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이 해당됨
- 기관장은 대중교통 출퇴근이 현저히 불편할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외차량을 인정해야하며 남발해서는 안됨
- 유연근무, 카풀, 통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2부제 이행을 적극 지원해야함

17	장애인 승용차, 국가유공자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은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 비표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

<답 변>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 표지, 파란색 번호판의 전기차 등 명확히 승용차 2부제 제외대상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승용차는 제외차량 비표 없이도 출입가능
- 다만, 출입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차단기에 차량번호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18	대중교통 배차간격 계산은 환승이 필요한 노선도 포함인지?
----	---------------------------------

<답 변>

-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8]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직통노선만 고려, n차 환승까지 고려 등)은 기관별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함

19	교대근무, 당직자 등의 차량이 운휴일이 아닌 날 출입하고 다음날(운휴일)에 퇴근해야하는 경우 전일출입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

<답 변>

- 격일 근무 등으로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차량으로 인정 권고
-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 주차된 차량은 별도의 확인서류를 담당부서로부터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함
- 출차하는 날이 운휴일인 경우는 차량운행이 제한됨

20	관용차량 관련하여, 1박2일 등 여러날 동안 출장차량의 경우 어떻게 관리는지?
----	---

<답 변>

- 관용차량도 2부제 대상에 해당됨으로 차량 운행이 제한됨
- 다만, 출장일정 등의 특수성으로 여러날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외차량으로 운행 가능

21	희귀질환, 공황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	---

<답 변>

- 희귀질환, 공황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임직원의 경우 진단서 등 질병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관 판단 하에 제외 가능

22	긴급방역, 재난발생 등으로 제외차량으로 관리되지 않은 차량들이 긴급하게 출장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

<답 변>

- 긴급, 의료, 보도, 소방 등 특수목적의 차량은 시행지침에 따라 제외 가능하므로,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증명서를 발급하시어 운영하기 바람

23	제외차량으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경우 편도 30km 이상의 기준은 직선거리인지? 최단거리 혹은 최적거리인지?
----	--

<답 변>

- 장거리 출퇴근 대상은 통상 출퇴근 경로(최적 거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30km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기관의 소재지, 특성 등에 따라 세부기준(최단거리, 최적거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가능

24	다른기관에서 제외차량 비표를 받은 차량은 출입 시켜도 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별표3]에 따른 비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야 함

25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은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지역의 첫차, 막차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	---

<답 변>

- 기관 소재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 시간대와 같은 세부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가능함

26	관용차량이 장거리 출장(30km 이상 등)가는 경우에는 제외 차량 가능한지?
----	--

<답 변>

- 공공기관 공용 승용자동차는 2부제 의무 대상차량이므로, 운행 제한이 원칙임
- 다만, 모든 공용 승용자동차가 2부제 대상으로 운행이 제한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기관장이 일부 차량을 제외차량으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함

27	6시 이전 출근 11시 이후 퇴근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전부 제외차량으로 관리하는지? 간헐적 제외차량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	--

<답 변>

- 대중교통 이용 불가 시간대 간헐적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경우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시간대만 제외차량으로 지정
- 비표에 제외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28 제외차량 중 기타 인정하는 예시는?

<답 변>

- 희귀질환, 공황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역차량 등 매일 출장이 불가피하고 증빙 가능한 차량, 병원 비상당직 등 비상호출 등의 출근이 빈번한 직원 등 사례

29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의 경우, 유치원 등에 아이를 등원시킨 후 출근할 경우는 혼자 출근하게 되는 데 이런 경우는 기존처럼 제외차량으로 인정되는지?

<답 변>

-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등원 시킨 후 혼자 출근하는 경우도 유아 동승차량에 포함됨
- 다만, 재원증명 등을 통해 비표를 받아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함

30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 800m’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	---

<답 변>

-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는 출퇴근 최적경로 상 정류장, 집 또는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 모두 인정가능하나, 기관장이 기관별, 임직원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음
- 기관장이 대중교통 열악지역으로 인정할 경우 2부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함

31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직원차량의 경우 출장이 잦으면 예외차량으로 인정 가능한지?
----	--

<답 변>

-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전부 2부제 적용 대상임
- 다만, 잦은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은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함

32	부부가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임신부의 차량뿐만 아니라 남편 차량도 임신부 동승 차량으로 제외 가능한지?
----	--

<답 변>

- 부부가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임신부의 차량과 남편의 차량 중 한 대를 선택하여, 한 대만 임신부 동승차량으로 제외할 수 있음

33	공공기관의 시험용 차량 등 업무상 꼭 필요한 차량의 경우 구제방안이 있는지?
----	--

<답 변>

- 시험 관련 업무상 꼭 필요로 하는 차량의 경우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함

34	개인의 자택이 아니라 도로공사 등 사업장이 교통열악 지역에 있는 경우도 2부제 제외차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답 변>

- 사업장 소재지가 대중교통 이용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이 임직원차량 모두를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사유와 대상차량 등을 시행계획에 제출해야함

35	박물관 등에 가족을 동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5부제 공영주차장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

<답 변>

-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지침 '1-5.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가목에 따라 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기를 권고

36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에 대해 기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 등만 포함되는지? 기관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포함인건지?
----	---

<답 변>

- 위치와 상관없이 유아동승 차량은 제외됨

37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로 제외적용 받은 비표는 다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도 제시 가능한지?
----	--

<답 변>

- 전기차·수소차,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등 공통 제외 대상 차량은 제시 가능
- 그러나, 기관 특성에 따라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등의 2부제 제외 비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받을 수 없음

38	공공기관 청사주차장에 기관 요청에 의한 A/S차량(공사, 물품 관리 등)의 입차도 제한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업 목적으로 출입해야하는 영업용 차량은 출입 가능

39	장거리 출퇴근 차량의 기준이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출퇴근 시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위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매우 불편한데 지역 간 이동에 대해서도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	--

<답 변>

-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가 거주지와 직장을 오가는데 있어 대중교통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이 제외 차량으로 인정 가능

40 승용차 2부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방법은?

<답 변>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경우 홀수일에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함
- 평일에만 적용하며 토·일·공휴일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1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기관 주차장에 장기주차한 차량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 변>

-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 주차된 차량은 별도의 확인서류를 담당부서로부터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함
- 출차하는 날이 운휴일인 경우는 차량운행이 제한됨

42 31일이 있는 경우 짝수 차량은 이틀 연속 운행을 못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답 변>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는 모든 차량이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3 승용차 2부제 제외차량 비표 양식을 꼭 준수해야 하는지?

<답 변>

- 승용차 2부제 제외차량 비표 양식을 준용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다만, '적용제외기간', '제외사유', 기관 날인 등 양식 내 정해진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전날 운행하고 다음날 주차장에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는 확인증을 2부제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차량전면에 부착해야함

44 승용차 2부제 시행 홍보 방법은?

<답 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http://min24.energy.or.kr/pe>)'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승용차 2부제 시행 포스터를 출력하여 청사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할 수 있음
  - 주차장 입구에는 별도의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 등을 설치
- 사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매일 시행협조 요청을 하고, 사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도 시행을 안내
- 건물 내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45 이행실태 점검 시 미흡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패널티는?

<답 변>

- 고시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치명령, 조치결과 관리기관 보고,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

46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적용 우선순위는?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본 시행지침을 우선 적용
-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47 2부제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디서 제출하는지?

<답 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http://min24.energy.or.kr/pe>) 내 승용차 2부제 탭에서 시행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행계획은 2026년 4월 7일까지 상기 시스템에 제출해야하고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소속, 산하기관 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각급 학교는 개별 제출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이 취합하여 일괄제출
- 이행결과는 매달 2회(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상기시스템에 제출
  - \* 이행결과 제출일자 : 4월 15일, 5월 6일, 5월 20일, 6월 4일(3일 공휴일), 6월 17일 등 매달 2회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통보시 까지
- 이행결과 보고와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제도운영 실무기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

48 2부제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대상 기관은?

<답 변>

- [붙임2]의 1,023개 관리감독 기관과 정부청사관리본부 본지청 13개 기관이 제출 대상임
- [붙임2]의 1,023개 관리감독 기관은 소속기관, 지사·지청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취합하여 등록해야 함

49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입주기관의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 작성 방법은?
----	-------------------------------------

<답 변>

-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입주기관 모두 2부제 시행 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대상임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든 입주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별표1], [별표4]에 따라 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해야 함. 단, 유연근무/재택근무 시행계획, 위반자 조치계획, 위반자 조치결과 등 입주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기관은 시행지침 [별표1], [별표4]에 따라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함. 단, 주차장 수, 주차면 수, 출입차단기 5부제 입력여부 등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50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

<답 변>

- 시행 계획과 이행결과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승용차 2부제” 메뉴로 이동, [엑셀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등록·제출하면 됨
- 이행 결과 제출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안내예정

51	소속기관의 경우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는 분청에서 취합 제출 하는지? 각자 제출하는지? 사무소, 분소 등 작은 단위로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함
----	---

<답 변>

- 공공기관 총괄 담당자는 각 지사/지역본부 등 소속기관의 시행계획 및 실적을 취합·제출해야 함

52	2부제 관련 사내방송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	--------------------------

<답 변>

- 사내방송 예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기관 별로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 가능

53 공공기관 청사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도 단속 필요한지?

<답 변>

- 공공기관장은 차량 운행 후 인근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암체차량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적발하도록 노력해야함
- 또한 해당지자체에 청사인근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여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54 승용차 2부제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은?

<답 변>

-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 현장 계도 및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제한 조치,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사유, 위반정도 등을 소명 받아 적정수준의 징계처분을 권고함
- 공공기관 근무자가 가족차량 등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서 2부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적발할 시, 또는 실제로 2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한 후 인근도로 등에 주차하는 경우를 적발할 시에는 더욱 엄히 처벌 권고(1회 적발시 즉시 기관장 보고)
- 위반횟수는 기존에 시행하던 5부제 위반횟수에 누적하여 계산

55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을 목격·신고한 경우 조치 방안은?

<답 변>

- 내·외부인이 승용차 2부제 대상임에도, 청사 내 주차장 또는 인근 주차시설에 주차한 것을 목격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담당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56 상습위반자(3회 이상)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답 변>

-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유, 위반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적정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57	단속 및 위반에 대한 기준은 출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것을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	--

<답 변>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운휴일에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이 원칙임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 시도 자체가 위반으로 판단해야함
- 구체적인 단속 지점 등 세부적인 단속 운영 사항은 공공기관장이 기관별 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58	5부제 단속에서 위반했던 횡수는 2부제 단속에 누적되어 징계대상이 되는지?
----	---

<답 변>

- 위반횡수는 기존 시행 중인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5부제 위반 횡수를 누적하여 관리해야함

5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 &lt;답 변&gt;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으로 시행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

60

공공부문이 승용차 2부제 적극 실천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나, 2부제 준수를 적극 이행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지?

## &lt;답 변&gt;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근무자가 민간에 앞서 고통을 감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하므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는 없음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070-4703-3730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증동전쟁으로 에너지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원 안보 위기 “경제단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도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 승용차 2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행하지 말아야 할 일자를 확인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